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 모델



이 자료집은 다음세대 재단 (<http://www.daumfoundation.org/>)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74-4551

홈페이지 : <http://ipleft.or.kr>

이메일 : ipleft@jinbo.net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 모델

제작 :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ipleft.or.kr>)

본 연구의 목적

다음세대 재단의 후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보공유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공유운동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공유에 장벽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 아래, 대안적 시스템으로써 각 정보공유운동 모델에 적합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여,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정보 공유 라이선스는 (1) 저작자의 콘텐츠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 그럼으로써 디지털 도서관, 과학 기술 분야 등의 오픈 액세스 저널 및 아카이브, 정보트러스트운동 등에 널리 활용되어, (3) 나아가서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라는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I.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5
1. 저작권의 특성	6
2. 정보의 이용과 확산을 저해하는 저작권	7
3. 정보공유 운동과 정보공유 라이선스	10
II. 해외의 정보공유 운동 모델	13
1. 소프트웨어 분야	14
2. 컨텐츠 일반	17
3. 학술 분야	22
4. 음악 분야	27
5. 교육 분야	30
6. 기타	32
III. 국내 정보공유 운동 모델	35
IV.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해설	40
V.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49
1.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 Ver 1.0	50
2.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허용·개작불허 Ver 1.0	54
3.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 Ver 1.0	58
4.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불허 Ver 1.0	62

1장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¹⁾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무한한 속성을 가진 정보를 '유한한 재화'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창작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제한의 근거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창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과 같이 특정한 몇 개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 역시 일정하게 제한된다.²⁾ 또한,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에도 교육·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에서, 혹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³⁾ 이와 같이 저작권이 '사적 권리'와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유 역시 정보 자체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모든 새로운 정보의 생산은

1)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3) 국내 저작권법은 이를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창작자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보들에 기반하여 생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여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이나,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기반이 된다.

2. 정보의 이용과 확산을 저해하는 저작권

저작권은 항상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균형'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 저작권 체제가 정보의 이용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심지어 정보의 이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직지 프로젝트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 국가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기증운동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국가 디지털 도서관이란 것이 있다. 국회 도서관, 국립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국민이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저작권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등에서 주로 논문 저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였다.

○ 정보 트러스트 운동

사라져 가는 웹페이지를 백업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일종의 '오픈 아카이브(open archive)

운동'을 벌이고자 의욕적으로 시작한 정보 트러스트 운동 역시 저작권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웹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료의 복구를 허가한다고 해도, 개별 게시물들의 저작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일일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백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⁴⁾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특정한 이용을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저작물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작품성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특정한 소설은 작가의 개인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더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저작권은 이를 제한하게 된다.

○ 소리바다 분쟁

'소리바다'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MP3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들은 이를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음반사를 비롯한 저작(인접)권자들은 소리바다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소리바다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저작권 때문에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성이 제약되어야 하는가?

몇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권에 내재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정보의 이용 및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현재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4) 위 세개의 사례는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인수,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토론회 자료집(2003)에서 인용.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나 정보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마저도 저작권 체제의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작자 사후 50년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또한, 저작자의 의도나 저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되어 이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저작권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후 저작권 보호기간은 끊임없이 연장이 되어 왔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사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환원되는 정보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한 저작물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저작권 보호기간보다 훨씬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큰 상업적인 가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들이 활용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의 비영리적 이용까지 규제하게 된다. 서점에서는 책을 복제하지 않더라도 접근해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에 접근하고 보는 것 자체가 복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까지 통제하게 된다. 디지털 도서관을 원격으로 복제 없이 열람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저작권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가?

과거 저작권은 주로 대량의 상업적 복제를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소리바다를 둘러싼 분쟁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저작권은 개인들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문제를 떠나 개개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규제되고, 혹은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보공유 운동과 정보공유 라이선스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 체제의 강화를 비판하고, 현 저작권 체제 내에서 공공성 및 공정 이용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현 저작권 체제가 저작권자의 사적 이익과 공정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개작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 저작권 법·제도와 전혀 대립을 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체제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을 교육 운동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현재의 잘못된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운동, 후자는 대안적인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정보의 상업화와 독점화는 저작권 체제에 기반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 체제 자체가 정보의 상업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실제 생산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지 법·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 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운동과 함께, 대안적인 생산 양식을 실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나 학술 아카이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묻혀져가는 유용한 지식을 빌굴하고 보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돋는다.

둘째는 창작자들이 공개 라이선스를 통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정보공유 운동들은 위 두 가지 모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정보공유 운동을 위해 공개 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 혹은 창작자가 이용허락을 한 범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여러 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자신은 저작권을 포기했지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공개 라이선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라이선스에 표현된 운동의 철학이며, 공유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얼마나 개방적이며,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실천들을 이끌어내고 있느냐일 것이다. 어떠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창작자의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동일한 라이선스를 선택한 창작자들은 같은 철학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는 공유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를 개발하는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리눅스 공동체’ 혹은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지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개발과 공유적 문화를 이루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실험되었던 국내외 정보 공유 운동의 모델들과 공유 라이선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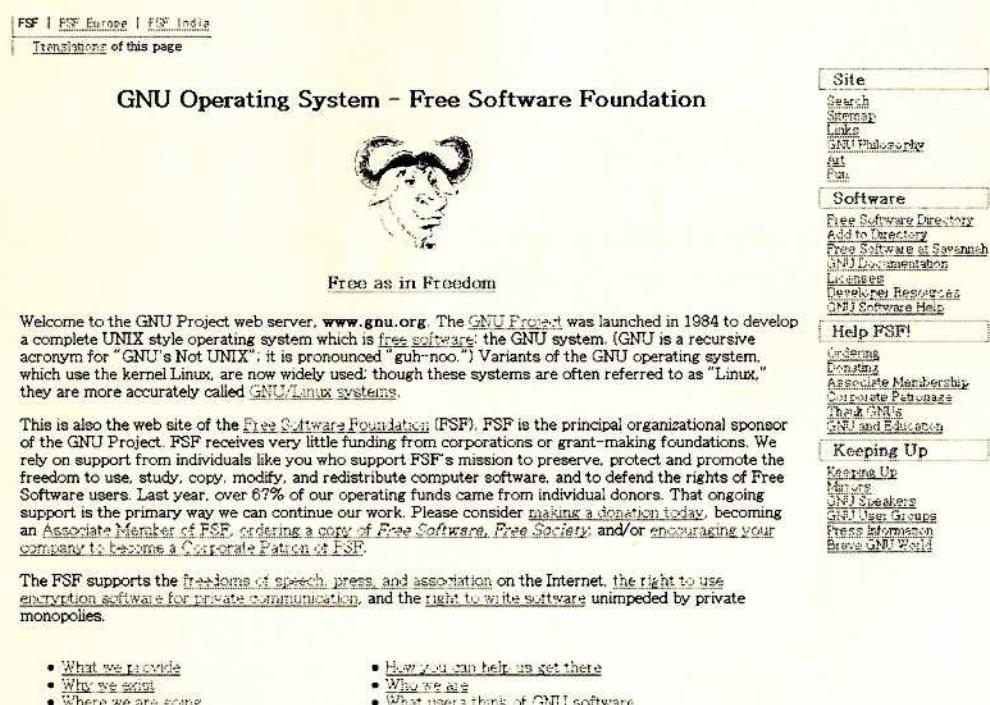
2장

해외의 정보공유 운동 모델

1.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 정보공유 운동 모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시작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톤만이 1984년에 시작한 GNU 프로젝트는 GNU GPL이라는 독특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현실 저작권 체제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리눅스라고 알려져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독점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1)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



GPL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이와 함께 4가지 자유를 부여한다. 즉,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돋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이다. 다만,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재배포할 경우,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 라이선스를 채택해야 한다.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하는데, 여기서 'Free'란 '무료'의 의미가 아니라, 복제·수정·재배포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만 존중한다면, 영리/비영리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2) 오픈소스 운동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

오픈소스 운동은 1998년 만들어졌다.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GPL 라이선스의 엄격성에 반발하여 만들어졌으며, 오픈 소스 정의만 준수한다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프로그래머가 소스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GPL 처럼 수정되어 하지만, GPL 처럼 수정된 프로그램이 재배포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픈 소스 운동은 개념상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지만, BSD 라이선스,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 훨씬 더 많은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Site Index](#) | [Trademarks/Graphics](#) | [F.A.Q.](#) | [Search](#) | ['Open Source' Swag](#)

Quick Links:

- The Open Source Definition
- Open Source Licenses
- Open Source Awards
- The Hall of Fame
- OS for Customers, Business, and Programmers
- Announcements Mailing List
- [Site Index](#)
- Graphics/Trademarks

OSI News - Jan 28 2004:

- License Update
- Q2 2004 Winners Announced
- Weather.com Moves to Open Source
- BayStar Capital Want Shares Cashed Due to Breach
- Paxfire Has Now Confirmed MS Ties
- Business Week Confirms MS Orchestrated Hedge Fund Investment in SCO
- Business Week Confirms MS Orchestrated Hedge Fund Investment in SCO
- MS & SCO May Be Under SEC Investigation
- Computer Associates Denies Having Bought SCO License
- Microsoft V. SCO Trial Set for June

Open Source Initiative (OSI) is a non-profit corporation dedicated to managing and promoting the Open Source Definition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 specifically through the OSI Certified Open Source Software certification mark and program. You can read about successful software products that have these properties, and about our certification marks and programs, which allow you to be confident that software really is "Open Source." We also make copies of approved open source licenses here.

The basic idea behind open source is very simple. When programmers can read, redistribute, and modify the source code for a piece of software, the software evolves. People improve it, people adapt it, people fix bugs. And this can happen at a speed that, if one is used to the slow pace of conventional software development, seems astonishing.

We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have learned that this rapid evolutionary process produces better software than the traditional closed model, in which only a very few programmers can see the source and everybody else must blindly use an opaque block of bits.

Open Source Initiative exists to make this case to the commercial world.

Open source software is an idea whose time has finally come. For twenty years it has been building momentum in the technical cultures that built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Now it's breaking out into the commercial world, and that's changing all the rules. Are you ready?

This site is still evolving as we think through the implications of open source in the commercial world. We don't claim to have all the answers yet, so [mail us](#) with your thoughts and criticisms. Also, please send us URLs of articles and papers on commercial trials of the open source model, on open source software including such packages as Linux and Apache, and related topics.

Mirrors of this site are available in the following countries: Canada (new!), Austria, USA (Boston), USA (Calif.), USA (Calif.), Singapore, Denmark, Hungary, Italy, Sweden, U.S., Philippines (new!), Australia, and Germany [2], South Africa [2] [3], Netherlands (new!).

2. 컨텐츠 일반

1) 공개 컨텐츠 라이선스(OCL, Open Contents Lincese) <http://opencontent.org>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공유운동이라면,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공개 컨텐츠 라이선스(OCL)와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 Open Publication License)는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음악·사진·영상저작물 등을 포괄하는 저작물 공유운동이다. 윌리씨가 오픈 컨텐트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하면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GPL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OPENCONTENT

[Home](#) | [Open Content License v1.0](#) | [Open Publication License v1.0](#)

OpenContent License (OPL)

Version 1.0, July 14, 1998.

This document outlines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OpenContent (OC) movement and may be redistributed provided it remains unaltered. For legal purposes, this document is the license under which OpenContent is made available for use.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document may be found at <http://opencontent.org/opl.shtml>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and Modifying

Item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ng, and modifying the Content with which this license was distributed (such as using, etc.)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license.

1. You may copy and distribute exact replicas of the OpenContent (OC)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disclaimer of warranty; keep intact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OC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OC. You may at your option charge a fee for the media and/or handling involved in creating a unique copy of the OC for use offline, you may at your option offer instructional support for the OC in exchange for a fee, or you may at your option offer warranty in exchange for a fee. You may not charge a fee for the OC itself. You may not charge a fee for the sole service of providing access to and/or use of the OC via a network (e.g. the Internet), whether it be via the world wide web, FTP, or any other method.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OpenContent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works based on the Content,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그는 1998년에 OCL를 발표하였고, 1999년에 OPL을 발표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로 게임 매뉴얼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이 주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월리씨가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여 운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OPL은 GPL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의 주요 내용

① 복제, 배포의 허용 : OPL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복제나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범위 : 다음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OPL 저작물에 적용된다.

가. OPL 저작물들이 동일한 매체의 다른 OPL 저작물들과 합쳐지거나, OPL 저작물의 일부가 동일한 매체의 다른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에 합쳐질 경우 본 OPL이 다른 저작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본 OPL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③ 변형 저작물들의 준수사항 : 본 OPL이 적용되는 모든 변형된 저작물(번역, 편집 등 포함)들은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변형 저작물들은 변형된 사실, 변형을 가한 자, 변형을 가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가능하다면 원저작자나 출판자, 원저작물의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증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④ 조건 : 저작자나 출판권자는 아래의 조건을 불일 수 있다.

가. 본 저작물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저작물(2차 저작물)의 배포시에는 저작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본 저작물 또는 본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할 수 없다는 조건.

2)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Creative commons는 인터넷 법률(Cyber law)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시'(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 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의 공유 라이선스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로 Common Contents(디렉토리), Magnatune, Opsound, OYEZ (이상 오디오), Prelinger Archives (비디오), OpenPhoto, FreeMedia (이미지), Eldritch Press (텍스트), MIT OpenCourseWare, Connexions Repository (컨텐츠 포털) 등 수많은 오픈 컨텐츠 사이트에서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Attribution. 원자작자 표시



Non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



Share Alike.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을 때만 배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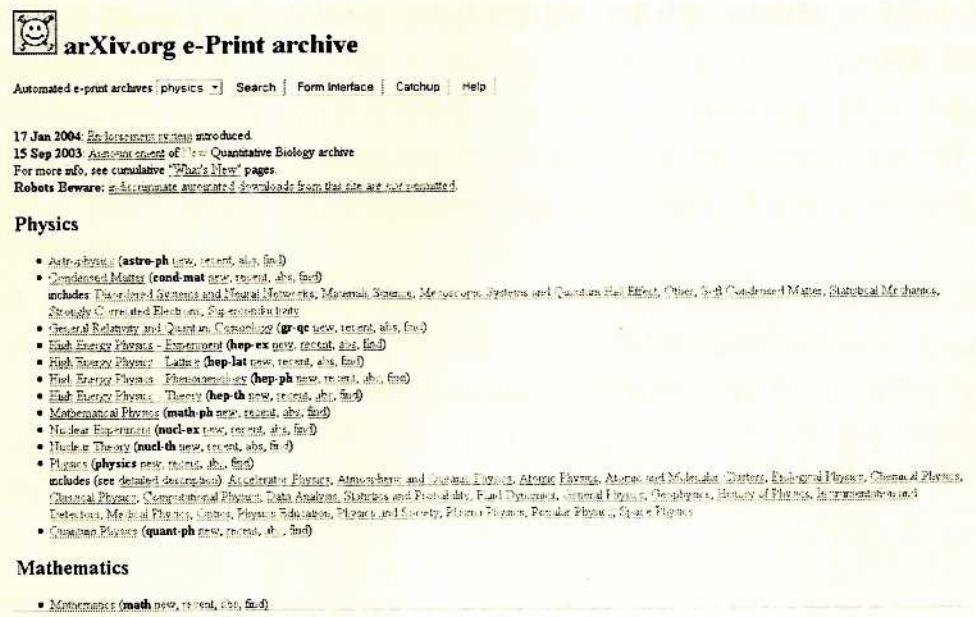
No Derivative Works. 2차 저작물 금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CCPL,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함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체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작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강화로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창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여 공공 정보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3. 학술 분야

현재 학술논문에 대한 공공접근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술논문의 공개 형태는 과학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논문이 처음부터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학술논문에 대한 공유운동 역시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아카이브(arXiv) <http://arXiv.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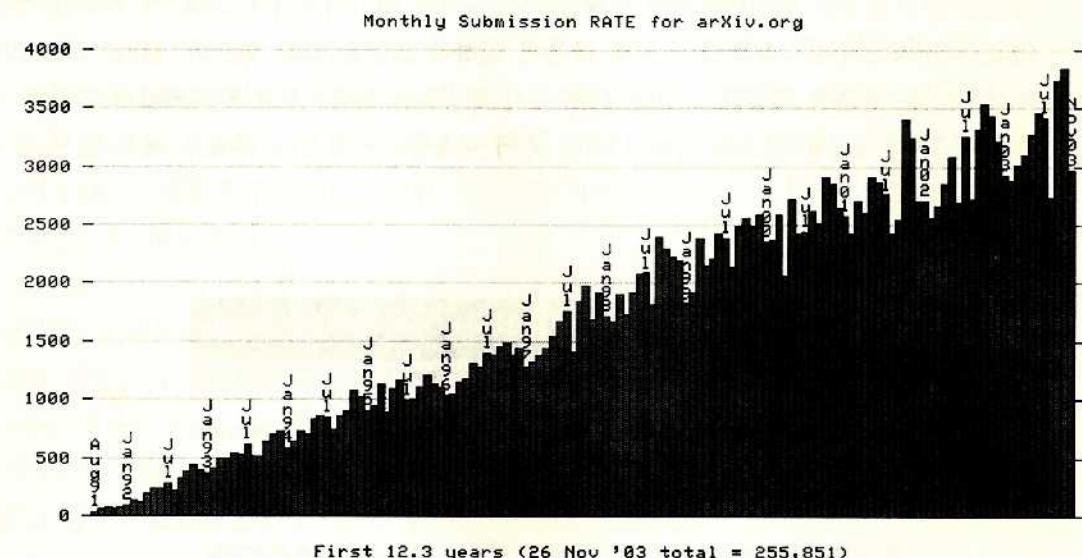


arXiv는 1991년 8월에 출범한 배포 전 기사 아카이브로써, 가장 먼저 시작한 공유적 모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arXiv는 hep-th(High Energy Physics-Theory)로 시작하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여명정도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이 hep-th@xxx.lanl.gov라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연구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e-print archive'는 학술논문의 결점을 극복하는 실험적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단기간 내에 고에너지분자 이론 분야에서 진행 중 연구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는 물리학과 그 관련분야, 수학, 비선형과학, 컴퓨터언어학, 신경과학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웹 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이다.

아래 그림은⁵⁾ arXiv.org의 월간논문제출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막대는 1991년 아래로 현재까지 매달 새로 제출된 논문의 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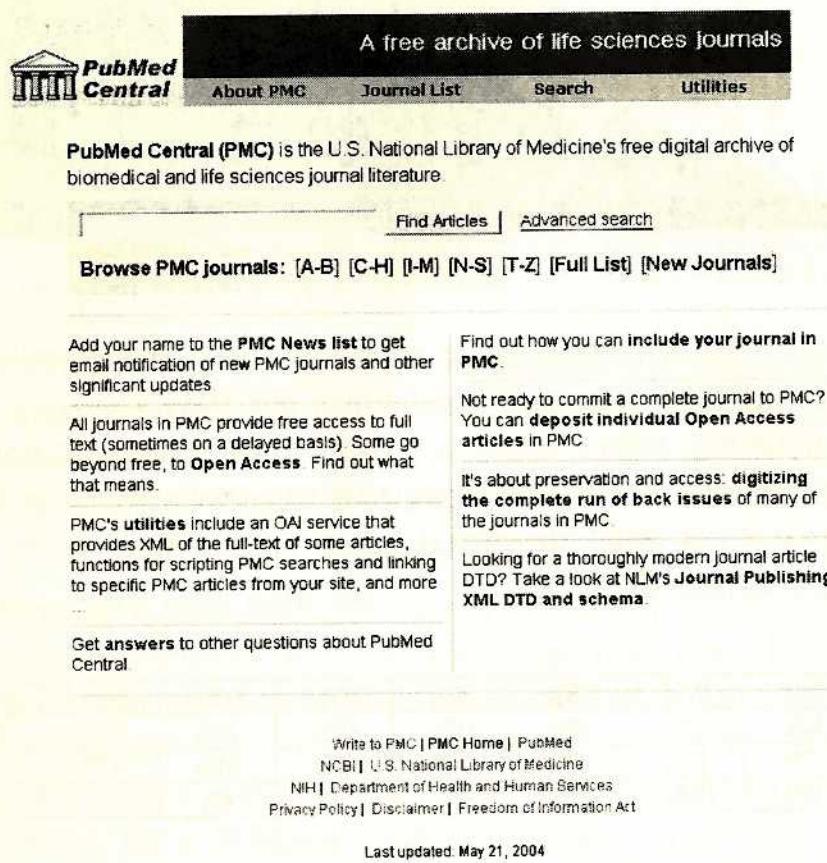
이곳에서는 다양한 미러 사이트(Mirror Site)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서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 적은 시스템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kr.arXiv.org)을 포함하여 18개국에 미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이메일 형태의 폐쇄적인 이용방식에서 빠르게 웹 기반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논문을 쓴 저자가 총 99,76명으로 미국과 독일이 각각 24.7%와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982명으로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p load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web	13%	21%	49%	60%	68%	75%	80%	84%
e-mail	77%	67%	43%	34%	27%	21%	17%	14%
ftp	10%	12%	8%	6%	5%	4%	3%	2%

5) http://arXiv.org/show_monthly_submissions

2) 공공의학센터(PMC, PubMed Central) <http://www.pubmedcentral.nih.gov/>

PMC는 미국의 의학국립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한 부서인 생명과학정보를 위한 국립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2000년 2월부터 운영한 생명과학분야 학술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MC는 1999년 설립된 PMC 국립자문위원회에서 그 운영과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80여종의 학술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PMC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은 인쇄저널이 출간된 직후 혹은 출간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PMC는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과 배포 후 기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arXiv와 다르다. PMC는 MEDLINE, Agricola, Biosis,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Science Citation Index 등과 같은 색인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망라되어 있는 학술논문의 논문만 수용하며, 적어도 세 명의 편집위원을 둔 학술논문의 논문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PMC는 개별 저자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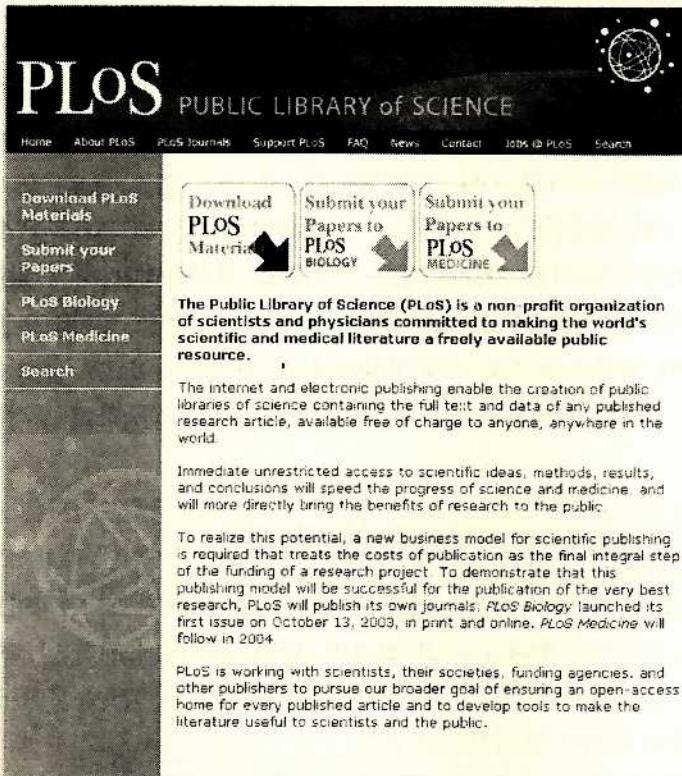
PMC에 기탁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 혹은 개별 저자가 가지고 있다. PMC는 단순히 아카이브이며, 그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PMC는 학회의 우선적인 임무가 과학과 과학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학회는 반드시 PMC에 어떻게 참여하여 그러한 기본적인 임무에 기여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PMC는 도서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공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의학국립도서관은 수십년 동안 인쇄물로 된 생의학 문헌을 지켜내고 유지했던 것처럼 전자적인 문헌에 대해서도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이 무료이고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열린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유용성을 최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82개의 학술논문이 공유되고 있으며 조만간 8개의 논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3) 공공과학도서관(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0년 10월 아래의 공개 편지(open letter)로부터 시작되었다. PMC를 통한 온라인 학술논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존 상업적 논문지에 대항하는 권위 있는 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인쇄물형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PLoS의 창간을 주도한 과학자는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바머스 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패트릭 브라운 박사, 저명 과학잡지 셀 편집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비비안 시겔 박사 등으로 이들은 학술논문의 창간사에서 "인류 전체의 업적인 과학 논문은 혈액처럼 유통돼야 하며, 과학의 성과를 모든 과학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학잡지 산업이 연간 1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윤을 올리며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모든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전체 연구논문을 공개하며, 2004년에 아주 권위 있는 의학전문 저널을 창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PLoS의 공개 편지(open letter)

PLoS initiative는 이 공개 편지의 회람을 통해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의 공공과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179개 나라 30264명이 이 공개 편지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의학, 생명 과학 분야에서 출판되어진 연구 학술 논문들이 전체 내용

에 대해 검색과 접근, 그리고 상호 링크가 자유로운 온라인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지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과학 논문의 이용과 접근 빈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과학의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생체의학(biomedical sciences)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지식을 통합하는 데 있어 축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 저널의 출판사들은 과학 소통에 있어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합법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 연구와 아이디어의 영구적이며, 축적된 기록들은 출판사에 의해 통제되어서도 그리고 소유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오직 공공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온라인 공공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 저널의 출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001년 9월부터, 우리는 첫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의학센터(PubMed Central) 혹은 그와 유사한 공공 재원을 통해 그들이 출판한 연구 보고서 전체 원본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로운 배포권을 허용하는 과학 학술 저널에 대해서만 가입하고, 그 저널에만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4. 음악 분야

음악분야에서도 GPL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공개 라이선스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과연 음악 저작물에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딩이 더 우수한 방식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만 모듈 형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음악 저작물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1) 공개 음악 라이선스(OML,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OML은 자유소프트웨어의 정신을 음악의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저작권이 음반에 의한 판매를 강요하여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창작자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냄스터나 그누텔라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배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OML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현재 OML을 적용한 음악들이 담겨있는 첫 번째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OML은 공개출판 라이선스(Open Publication License)에 기초하여, green, yellow, red, rainbow 등 단계별로 4가지 종류의 OML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reen 라이선스는 GPL에 상응하는 음악에 관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다. 다른 색깔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rainbow 라이선스는 창작물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Green 라이선스를 권장하고 있고, 다른 라이선스들은 이미 음반 회사와 계약한 음악가들에게만 권장하고 있다.

각각의 라이센스의 허용 범위	green	yellow	red
사적인 이용 가능여부	yes	yes	yes
사적인 변형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복제 배포의 허용	yes	yes	yes
사적인 방송의 가능여부	yes	yes	yes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형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의 허용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송의 가능여부	yes	no	no

* "no"는 사용시 꼭 저작권자와 만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2) 공개 오디오 라이선스(OAL, Open Audio License)

http://www.eff.org/IP/Open_licenses/eff_oal.html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보운동 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⁶⁾는 2001년 4월 시청각물 자유 표현 운동(CAFE, Campaign for Audiovisual Free Expression)의 일환으로 OAL을 발표하였다. OAL은 음악가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기려 음악가의 이름을 표시한다면 누구든지 그 음악을 자유롭게 복제, 공유, 연주,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공개 음악 목록(Open Music Registry, <http://www.openmusicregistry.org/>)에서 OAL을 채택한 음악들을 듣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OAL Version 2.0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중 'Attribution Share-Alike license', 즉 원 창작자의 표시와 개작된 저작물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6) 전자개척자재단(EFF)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권리 보호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민 자유 기구이다. 1990년에 조직되어 EFF는 업계와 정부가 정보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개인 보호 및 공개권을 지원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도전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FF website home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 IP, and Open Licenses. A search bar is on the righ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EFF Open Audio License:' with a sub-section 'Version 2.0'. It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license, mentioning its interchangeability with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Alike 2.0. Below this is a large image of a lock icon. To the right is a sidebar with a list of topics such as Action Alerts, Anonymity, Biometrics, Blogs, CAFE, Censorship, Copyright Law, Digital Rights Management, DMCA, Domain names, E-venting, EFFector, File-sharing, Filtering, Freedom Test, FOIA,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Internet governance, ISP legalities, Licensing, OAIA, Linking, and Petitions.

3) 자유 예술 라이선스(FAL, Free Art license)

<http://antomoro.free.fr/c/lalgb.html>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 분야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OML이나 EFF의 OAL과 마찬가지로 GPL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차 저작물에도 FAL을 적용할 지의 여부는 저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4) 음악 공유 사이트

- MACOS (musicians against copyrighting of sample) : <http://icomm.ca/macos/>
- The Kosmic Free Music Foundation : <http://www.kosmic.org>
- The Free Music Philosophy (v1.4) : <http://www.ram.org/ramblings/philosophy/fmp.html>

5. 교육 분야

1) 베크만센터 <http://cyber.law.harvard.edu/>

하버드대 로스쿨 산하의 인터넷 사회연구소로 이 곳에서는 OpenLaw, OpenContents, OpenDVD 등의 오픈 소스 기반의 법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The header features the Berkman logo and the text "Berkman |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Below the header, there's a main navigation menu with links to Home, projects, Teaching, Research, Advising, Advocacy, about us, Mission, People, FAQ, The Filter, and search.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ree news articles:

- Judge Upholds Barbie Art** (6/28/2004 9:44 am)
A story about Mattel being sued by artist Tom Forsythe for his controversial artwork depicting Barbie in various poses. It includes a small image of the artwork and a link to the original source.
- Don't Beat Them, Join Them** (6/25/2004 11:53 am)
An op-ed by Berkman Center Director William Fisher in The New York Times. It discusses the latest round of recording industry lawsuits and argues for a better solution. It includes a photo of Fisher and a link to the original source.
- Dan Geer on Epidemiology and Computer Viruses** (6/25/2004 11:23 am)
A story featuring Dan Geer, an expert on risk and information. It includes a photo of Geer and a link to the original source.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are two sidebar boxes: "Upcoming Events" and "Court Documents".

2) Open Textbook Project <http://otp.inlimine.org>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라, 공개 교과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자유롭게 배포, 수정 가능하고, 공동 저작환경을 구축하여 공동저작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생산물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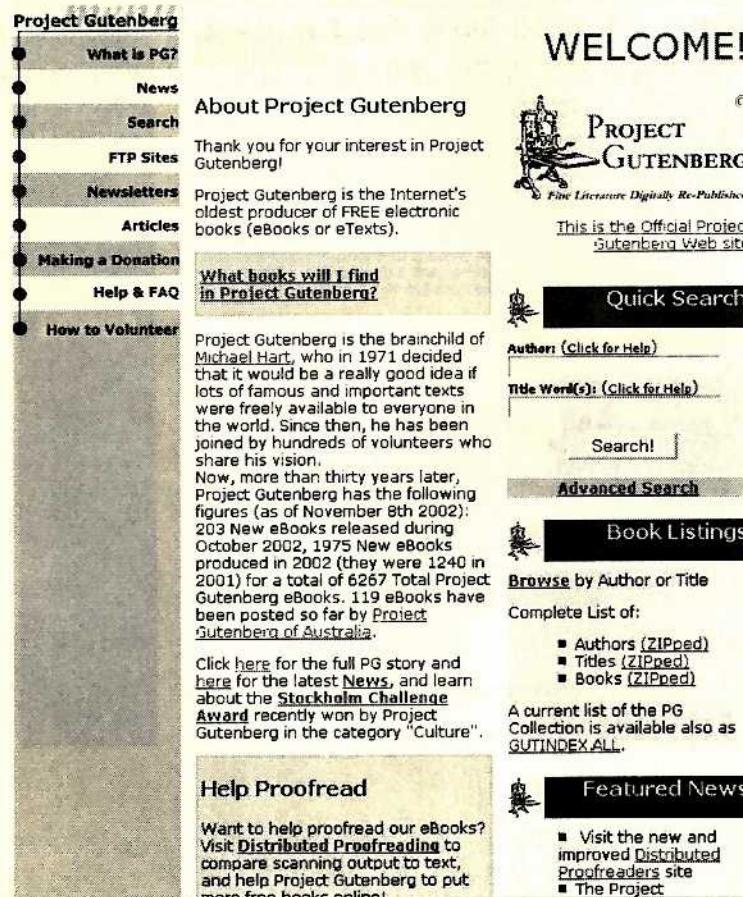
3) MIT의 Open Course Ware <http://web.mit.edu/ocw/>

OCW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MIT의 강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한하며, 모든 지적재산권은 MIT가 소유하고 있다. 2002년 가을에 시작해서 향후 10년간 MIT의 거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CW는 원저작자 표시를 하면,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지만, 사진이나 그래픽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제외된다.

6. 기타

1)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http://promo.net/pg/>)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그를 기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기간이 끝난 책들의 목록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날짜를 공개하면, 자원활동가들끼리 해당 책을 할당하여 전자책의 형식으로 책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는 오픈 컨텐츠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는 후미 프로젝트(<http://www.humi.mita.keio.ac.jp/treasures/index.htm>), 한국에서는 직지 프로젝트(<http://www.jikji.org>)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 컨텐츠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2) 위키페이지(Wikipedia) <http://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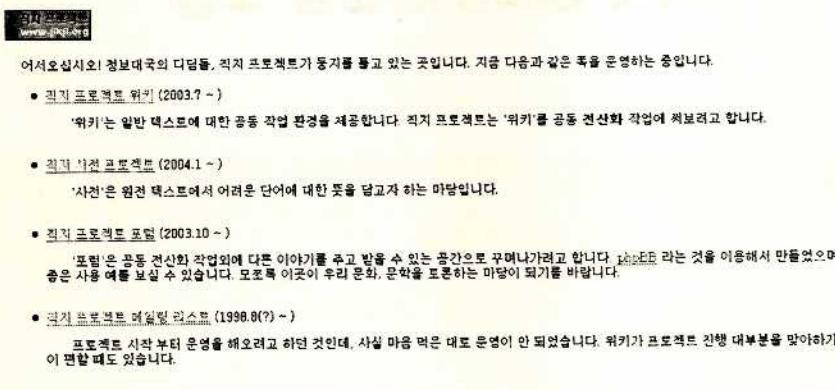
위키페이지(Wikipedia)는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쓰여져 가는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1월 15일 영어판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영어판 이외의 위키백과도 꾸준히 그 항목수가 늘어가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주제의 항목이 이미 10만을 넘어섰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항목은 총 37,0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젝트로 누피디아(Nupedia)가 있다.

3장

국내 정보공유 운동 모델

1.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첫 직지지기 김민수가 로마 문화권 문학을 전산화하는 영문 Project Gutenberg에 자극 받아 92년 경부터 준비하여 98년에 <http://www.jikji.org>라는 공식 주소를 받아서 시작하였다. 시작한지 1년 6 개월만에 30여 권의 작품을 전산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 후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전산화 작업을 꾸미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2003년 '위키'라는 공동 저작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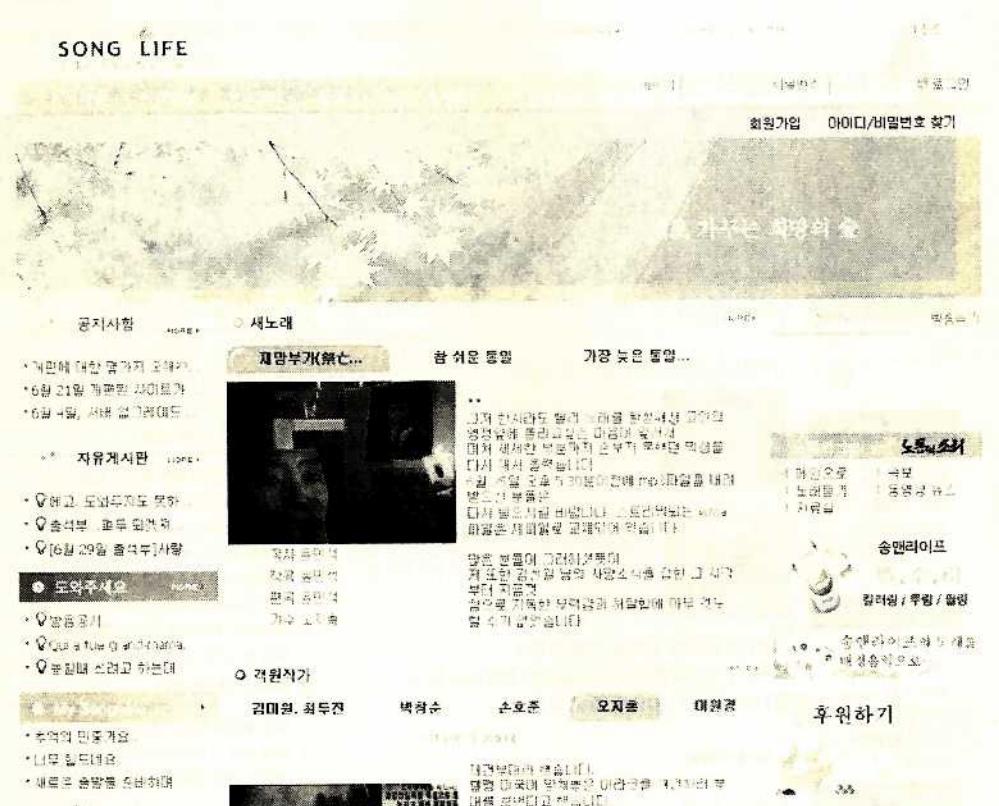
2.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 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한국정보운동 관련 시민단체들과 다음세대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은 1)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구현, 2) 정보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확산,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역사 정리, 인터넷 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가치있는 정보들을 복원하는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A screenshot of the Info Trust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ID, PW, 로그인, 회원가입, and 비밀번호찾기. The main banner features a large tree and the text "“이젠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The left sidebar has links for 검색, 트러스트 경장, 기획[4]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 역사 아카이브, 기술, 미디어, 정치/사회, 사이버문화, 비즈니스/경제, 법/제도, and 추천단체. The right sidebar has links for 기획[3] 디지털 납본 제도 현주소, 기획[2] 디지털 콘텐츠 복원 본격화, 기획[1] 디지털콘텐츠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 포럼] 디지털문화의 보존, Interview, and 동호회 열풍, 그 시작은...-김일기. A sidebar on the right lists various topics under the heading "● 알립니다.".

3. 송엔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음악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자발적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 음반은 민중가요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사본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위치하므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4장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해설

1.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안)를 개발하였다.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표 3>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유형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저작권자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영리적 이용 허용	영리·개작허용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적 이용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개작불허

○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GPL의 경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가 많다는 점이나, 비영리 단체의 영상 제작물을 영리 기관에서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보다 광범한 활용을 위해 창작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정보공유연대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라이선스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은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

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작성될 수 있고, (본 라이선스의 기본 취지는 원 창작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 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 것이다.

2. 라이선스의 구성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항목

조항	항목	내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의 효력 발생
2	적용의 조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무와 기존 법률과의 관계 규정
3	이용자의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대상으로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4	이용허락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하는 저작물이용의 내용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5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6	적용 기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
7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의 보증 내용과 정보공유연대의 면책사항 규정
8	본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판 개발 및 개정판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9	본 라이선스의 사용 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 지적 창작물의 사회적 공유 확산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에 대한 규정

1항 : 향후 저작물 - 저작물에 표기하는 방법

2항 : 기존 저작물 -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의사 표현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 이전의 저작물에 대하여 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2) 적용의 조건

1항과 2항 :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용 허락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

3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언급되기 어려우므로, 본 라이선스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기존 저작권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음. 특히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혹은 제한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3) 이용자의 범위

본 조항은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변경됨

○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유형 -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공중 모두가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 유형 -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중의 누구라도 이용자가 될 수 있다.

-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정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영리적 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리적 이용을 저작물 자체를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및 영리적 기업이 이용하는 행위로 제한하였으며, 비영리적 홈페이지에서 상업적 배너 광고를 띄우거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행위 등의 간접적인 행위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4) 이용허락의 내용

○ 저작인격권의 준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4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인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배포 및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을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

2차적 저작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작성

‘영리·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유형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유형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야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 라이선스 표시 의무(1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사용할 경우, 원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의무(2항) -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면 (즉, 원 저작물에 비해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본 라이선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GPL처럼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이용에 더 제한적이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영리·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유형의 경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유형의 경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의 경우(3항)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 함께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에 이용될 수 있다. 이 때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을 포함한 편집물(편집 저작물) 역시 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피될 수 있다. 이에 그러한 편집물(편집 저작물)의 경우,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해당 저작물에만 라이선스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저작인접권자의 의무(4항)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취지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이용을 더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적 통제장치 등 접근제한 조치에 관한 의무(5항)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할 경우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허용한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 예컨데, 기술적 접근 통제장치 등을 복제물 등에 장착해서는 안된다.

○ 영리적 이용자에 대한 규정(6항) - '영리불허 · 개작허용' 및 '영리 · 개작불허' 유형에만 있음

영리적 의도를 가진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한 이용자의 권리(제4조)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6) 적용기간

이용자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본 라이선스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창작자 -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한번 적용한 뒤 이를 번복할 수 없다.

7) 보증 및 면책

○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자의 책임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나, 향후 이 라이선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창작자 및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자의 보증

향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이선스의 보증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그것을 적용할 저작권자의 저작물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 개정판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규정

개정판의 판 번호

개정판의 적용방법 : 판번호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최신판의 적용을 받음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5장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1.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 허용 Ver 1.0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2) 적용의 조건

-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의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이용자는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에서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6) 적용기간

본 라이선스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종료되지 않는다. 단, 본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는 번호가 부여된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 [Ver 1.0]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 허용 · 개작 불허 Ver 1.0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이용자는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에서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준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6) 적용기간

본 라이선스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종료되지 않는다. 단, 본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는 번호가 부여된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허용·개작불허 [Ver 1.0]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 불허 · 개작 허용 Ver 1.0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2) 적용의 조건

-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의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베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이용자는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에서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본 라이선스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종료되지 않는다. 단, 본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는 번호가 부여된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

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 개작허용 [Ver 1.0]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 불허 Ver 1.0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2) 적용의 조건

-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의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이용자는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에서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본 라이선스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종료되지 않는다. 단, 본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는 번호가 부여된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개작불허 [Ver 1.0]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